

「구미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리자의 책무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기준 등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명확히 반영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입법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관리자의 책무 신설(안 제4조)
-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규정(안 제4조의2)
- 기타 용어의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
- 합 의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¹⁾(2023. 7. 21.)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시장이 설치·관리하는 개방화장실,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관내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미설치 화장실이 163개소(공중화장실 83개, 개방화장실 80개)로 집계되는 바,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하여 효과적이고 일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 부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1) 제7조(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)

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(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)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.

※ 별표 - 참고자료(2024. 4. 기준)

○ 관내 공중화장실 등 현황

(단위: 개소)

계	공공용 시 설	관광· 체육시설	교통시설	상업시설	주유소	기 타
301	87	150	10	7	39	8

* 출처: 구미시청 환경관리과

※ 공중화장실 : 공중(公衆)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, 지방자치단체,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

※ 개방화장실 :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화장실

※ 간이화장실 :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

○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

(단위: 개소)

계	향후 설치 대상(163)		기 설치
	공중화장실	개방화장실	
208	83	80	45

* 출처: 구미시청 환경관리과